

1. 개정이유

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함. 또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면허 효력 정지자의 치과기공소, 안경업소 개설을 방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하고 면허증 발급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
- 나. 면허신고확인서, 치과기공소 시설·장비 개요서, 안경업소 시설·장비 개요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면허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없음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)”을“(국가시험 응시 요건) 삭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-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른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성적증명서

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 결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 신고가 반려되지 않은 경우 각 중앙회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

제12조의3제1항 중 “시설 및 장비 개요서”를 “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

설·장비 개요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시설·장비 개요서”를 “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·장비 개요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

제1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년마다(매 2년”을 “3년마다(매 3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2015년 1월 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2015년 1월 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7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요건: 2025년 1월 1일

3.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: 2025년 1월 1일

4. 제12조의3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: 2025년 1월 1일

6. 제16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수 시 및 안경업소 양수 시 제출서류: 2025년 1월 1일

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현장실습 교과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경우 현장실습 최소이수 시간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1.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졸업한 자
2. 2025년에 졸업한 자가 별표 1의3의 최소이수 시간의 25% 이상을 이수한 경우
3. 2026년, 2027년에 졸업한 자가 별표 1의3의 최소이수 시간의 50% 이상을 이수한 경우

[별표 1의3]

현장실습 교과목 기준(제7조 제1항 관련)

의료기사 등의 종별	교과목명	인정 교과목명	최소이수 시간
임상병리사	임상병리사 현장실습	임상병리사 임상실습	총 320시간
방사선사	방사선사 현장실습	방사선사 임상실습	총 320시간
물리치료사	물리치료사 현장실습	물리치료사 임상실습	총 640시간
작업치료사	작업치료사 현장실습	작업치료사 임상실습	총 320시간
치과기공사	치과기공사 현장실습	치과기공사 임상실습	총 160시간
치과위생사	치과위생사 현장실습	치과위생사 임상실습	총 320시간
안경사	안경사 현장실습	안경사 임상실습	총 320시간
<p>비고: 1.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, 보건소, 치과기공소,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한다. 다만,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장소는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한한다.</p> <p>2. 위의 교과목명 또는 인정 교과목명에 “~Ⅰ”, “~Ⅱ”, 및 세부 학습 내용 등을 추가하여도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3. 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 시간 합산은 각 직역별 최소이수 시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			

면허신고 확인서

성 명 :

면허번호 :

직 종 :

귀하는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
면허신고를 _____년도에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※ 다음 면허신고 연도는 _____년입니다.

년 월 일

중앙회장

직인

치과기공소 시설 · 장비 개요서

치과기공소 시설현황

명칭		개설자	
소재지		전화번호	

치과기공소 장비현황

장 비 명	기준수량	보유수량	장 비 명	기준수량	보유수량
기공용레이드	1		초음파 청소기	1	
전산설계, 삼차원 프린터 또는 주소기	1		서베이어	1	
기공용 모터	3		진동기	1	
기공용 컴프레서	1		트리머	1	
치과용 프레스	1		샌드기	1	
전기로	1		진공매몰기	1	
포설린로	1		핀덱스	1	

기타

* 단, 하나의 장비로 여러 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그 장비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(기타에 기재).

안경업소 시설 · 장비 개요서

안경업소 시설현황

명칭		개설자	
소재지		전화번호	

안경업소 장비현황

장 비 명	보유수량	장 비 명	보유수량
시력표		동공거리계	
시력검사 세트		자동굴절검사기	
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		렌즈 정점굴절력계	

기타

<신 설>

2. 3. (생 략)

② 삭 제

③ (생 략)

제12조의2(실태 등의 신고) ① ~

③ (생 략)

<신 설>

제12조의3(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)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3조(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)

2. 성적증명서

3.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실태 등의 신고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 결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 신고가 반려되지 않은 경우 각 중앙회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

제12조의3(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) ① -----

-----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설·장비 개요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)

④ 안경업소를 양도·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·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·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⑤ (생략)

제26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1.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: 2015

④ 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

⑤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

----- 3년마다(매 3년) -----

1. 제7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요건: 2025년 1월 1일

2. -----
-- 2025년 1월 1일

<p><u>년 1월 1일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: <u>2015년 1월 1일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3.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: <u>2025년 1월 1일</u></p> <p>4. 제12조의3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: <u>2025년 1월 1일</u></p> <p>5. ----- -- <u>2025년 1월 1일</u></p> <p>6. 제16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수 시 및 안경업소 양수 시 제출서류: <u>2025년 1월 1일</u></p>
---	--